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동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6 발의연월일: 2020. 6. 17.

발 의 자:신동근・김정호・정청래

장경태 · 고용진 · 인재근

최인호 • 박상혁 • 소병훈

김회재 · 김철민 · 김윤덕

안규백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의 공개·누설을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.

그런데,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에 대한 침해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, 이미 발생한 피해는 사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. 그러므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의 공개·누설죄는 강력하게 처벌될필요성이 있는 데 반해, 현행법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었음.

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·누설한 경우 처벌수준을 현행 '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'에서 '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'으로 상향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의 2차 가해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년"을 "3년"으로, "500만원"을 "3천 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(벌칙) ① (생 략)	제50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
해당하는 자는 <u>2년</u> 이하의 징	<u>3년</u>
역 또는 <u>500만원</u> 이하의 벌금	<u>3천만원</u>
에 처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